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2. 한준호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1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한준호의원)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28조, 제36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근친과 원친의 법적 효과를 달리 하는 경우, 현행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근친과 원친을 구분하여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법적 효과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경우에 비해 법적 안정성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행 근친과 원친을 구분하는 친족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문언상으로는 친족관계에 대한 판단을 범인으로 할 것인지 피해자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근친과 원친을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도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임.

또한,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 또는 근친과 원친을 나누는 기준을 재확립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가까운 친족간의 범죄를 현행 형면제에서 친고죄로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